

-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로 지정(안 제5조 개정)
- 마.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안 제6조 개정)
- 바.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에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tillyou5477@korea.kr](mailto:tillyou5477@korea.kr)
- 팩스: 044) 202-8071

###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7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4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지에스건설(주)
- 나. 전화번호 : 02-2154-1114

2. 명칭 : 압력지연삼투(PRO)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에너지 회수 기술

###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플랜트 / 기타 플랜트

## &lt;기술의 요지&gt;

기존 담수 시설에서 버려지는 고농도 해수농축수를 유도용액으로 하고, 하수처리 방류수를 원수로 하여 삼투에너지를 생성시키고 회수하는 기술로서, 담수전력소모량을 20% 이상 절감 가능하며, 기존 담수 시설 대비 농축수를 30%이상 저감하여 희석 방류시켜 해양환경 오염부하를 줄이는 기술

## &lt;범위&gt;

기존 SWRO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 대비 소모전력비 절감을 통해 담수화 생산비용을 저감하는 경제적인 기술이며, 기존 역삼투(RO)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에서 파생되어 바다로 배출되는 고농도의 RO 농축수를 PRO 공정의 유도용액으로 사용한 후 희석 배출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 부하를 줄이고 기존 플랜트 후단의 농축수 희석시설의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4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차이의 정도에 따라 거주 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공공분양주택의 입주 의무 적용주택을 개발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이면 1년, 100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이면 3년, 100분의 70 미만이면 5년으로 함.

나. 공공분양주택의 입주 의무 적용주택에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미만인 주택을 포함하도록 함.

다. 기존주택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대상에 청년, 신혼부부 추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